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 .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종전의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법률 제6474호,2001.5.24.공포,2001.10.1.시행)됨에 따라 법령명칭 변경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용어변경
-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안 제1조,제6조)
-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안 제1조,제6조)
-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변경(안 제2조,제6조)

○ 대불금의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여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의 부담을 완화토록 함.(안 제7조)

3.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5. 참고자료

가. 관련법령 : 의료급여법
나.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다. 예산관련사항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성주군조례 제 호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성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하고,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사업"을 "의료급여사업"으로 하고,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의료보호기금" 을 "의료급여기금" 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한다.

제3조중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으로 한다.

제6조중 "보호대상자" 를 "수급권자" 로 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하며 "의료보호비"를 "의료급여비"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4회"를 "3회"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1월내지"를 삭제하고 "6월내의 납입기간"을 "6월이내 납입기간"으로 하며,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중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을 "독촉장을 받고도"로 한다.

제7조의2중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제1호중 "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다.

제7조의2제2호중 "시효가 소멸된 때"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로 한다.

제7조의2제4호중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을 "의료급여법 제21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명 성주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명 성주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명칭의 명확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수급권자" ---------- 의료급여 사업----------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수급권자----------의료급여비----------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②(생략)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 ----------. ②(현행과 같음)	적용법령 개정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제4조(생략)	제4조(현행과 같음)	
제5조①~③(생략)	제5조①~③(현행과 같음)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수급권자-----의료급여----------의료급여비----------의료급여 수급권자----------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②(생략)	②(현행과 같음)	상위법령에 따른 대불금 상환 변경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생략) 1. 10만원 미만은 4회 2.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8회 3. 20만원 이상은 12회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생략) 1. ---------- 3회 2. ---------- 30만원 ----- 3. 30만원 ----------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지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②----------6월이내의----------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 ---------- ---------- ----------.	상위법령에 따른 대불금 상환 변경
제7조의2(결손처분)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의결을 얻어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 --의료급여심의위원회---------- ---------- ----------.	상위법령에 따른 명칭 변경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수 없을 때	1. 수급권자 ----------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2.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 채권이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보고로서 가름한다.	4. 의료급여법 제21조제2항의 --- ---------- ---------- ----------	